

인력지원

인력

전문연구요원제도

석·박사 등 고급인력에게 학문과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지원대상

- 「병역법」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기업·벤처 기업부설연구소
- (물적요건)
 - 사방이 다른 부서와 벽체로 차단되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독립된 연구공간(분리구역 연구소는 신청 불가)
 - ※ 동일법인 내 2개 이상의 연구소가 있는 경우 연구분야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 (인적요건)
 -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명(창업기업의 경우 1인) 이상인 중소기업·벤처 기업부설연구소
 - 군미필자, 부소제지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접수산정 시 제외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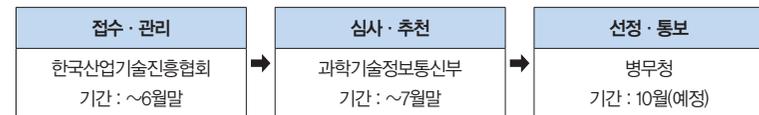
-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

(참고) 전문연구요원제도 VS 산업기능요원제도



구분	대체복무 분야	복무기간(현역)	편입대상
전문연구요원제도	연구·학문	36개월	석사학위 취득 이상
산업기능요원제도	제조·생산	34개월	학사학위 취득 이하

- (신청시기) 매년 6월 중(중소, 벤처기업은 매년 1,6월 2회 신청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RNDJM.or.kr)
 - 온라인 신청서 작성→등록→출력→날인하여 기타 첨부서류와 함께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지원규모

- (배정규모) 현역 2,300명
- 중소기업은 최대 지원을 위해 총괄 배정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1,000명(대학원 600명, 과학기술원 400명)
- 중견기업·대학부설은 편입률, 업체 평가결과 등 반영, 업체별 차등 배정
-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점 부여 지원

■ 문의처

-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 (RNDJM.or.kr)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 (☎ 02-3460-9181, 918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병역지정업체 접수처 (☎ 02-3498-8376, 8382, 8375, 8350, 8377)